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 9. 21.

사건번호 2023년 형제15224호

수신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발신자

검사 김은정 _____ (인)

제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피고인 지성욱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서울

죄명 강제추행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 제37조, 제3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없음

의견 벌금 5,000,000(오백만)원

가납명령청구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별첨첨부]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364 현대제일 상가 지하 1층 '스포애니 수내점'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자로 2022. 8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박OO(여, 31세)의 개인 PT 강습을 담당하였고 9월경 강습이 종료되었으나 혼자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성적 욕망이 일어나 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의자는 2022. 11. 2. 13:55경 헬스장 내에서 스쿼트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자세를 봐주겠다며 피해자의 뒤에 선 후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에 피의자의 몸을 밀착시킨 후 함께 스쿼트 동작을 수행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 부분을 접촉시켜 추행하였다.

2) 피의자는 같은 날 13:56경 센터 내에서 스쿼트 동작을 끝내고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디체크를 한다며 "이 등살 언제 다 뺄 거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허리 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3) 피의자는 같은 날 14:35경 센터 내에서 '레그 프레스' 기구에 앉아 발판을 밀어 올리며 하체운동을 하는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자세를 바로 잡아 주겠다며 피의자의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구부려 신체를 밀착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잡고 쓸어 올리는 등 추행하였다.

4) 피의자는 같은 날 14:44경 휘트니스 내에서 '레그 컬' 기구에 엎드려 누워 있는 자세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잡은 후

피해자를 기구 위쪽으로 밀어 올리고, 계속하여 운동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